



입시공정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규정번호	4-1-5
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24.3.20
책임부서/팀·계	입학학생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5조에 의거 입시 관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총장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1인 포함하여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2022.3.31. 개정><2023.6.21. 개정>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한다.

1. 입시부정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2. 입학전형의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3. 입시업무의 주요 과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요 입시업무에 관한 사항
5.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교직원의 출석과 관계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결) ①총장 및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시정조치) 위원장은 입학전형과정에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장은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